

# 2001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

의안 번호	제 655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1. 21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## 1.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유

- 고성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

## 2. 주 요 골 자

- 기금조성은 '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출연  
- 매년 60,000,000원 출연
- 기금사용은 기금조기 증식을 위하여 2001년까지 사용억제

## 3. 참 고 사 항

- 지방자치법제35조(지방의회의결사항)
- 지방자치법제118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
- 지방재정법제110조(기금의 운용등)
-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11조(기금의 운용계획)

## 4. 본 문 : 붙임과 같음

# 2001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

## 1. 법적근거

- 지방자치법제35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  - . 기금의 설치·운용
- 지방재정법제110조(기금의 운용등)
  - .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 및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 - .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.
- 지방자치법제118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
  - .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 40일전 까지 지방의회에 제출
  - . 시·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 하여야 한다.
-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제11조(기금운용계획)
  - .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
  - .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사항 포함
    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사항
    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관한 사항
    3.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
    4.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  - 회계개시 40일전까지 고성군의회에 제출 심의.의결을 받아야 함

## 2. 2001년도 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

- 2001년 기금조성계획
  - 기조성액 ----- 356,848천원
  - 2001년 조성액 ----- 95,000천원
    - 기금출연 ----- 60,000천원
    - 이자수입(예상) ----- 35,000천원
  - 2001년말 조성예상액 ----- 451,848천원
- 2001년 기금사용 계획
  - 기금의 조기 증식을 위하여 2차 기금조성기간 2001년까지 사용억제